

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채인묵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채인묵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유 용, 이태성, 이성배, 이광호,
김경우, 이현찬, 김정환, 김소양,
권영희, 임종국, 김동식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문맥이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22조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민의 권리)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·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·보존·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민의 권리)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·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·보존·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<u>아니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며</u>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	<p>제3조(시민의 권리)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·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·보존·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<u>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</u>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
<p>제2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</u> 3. ~ 4.(생략) 	<p>제2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3. ~ 4.(현행과 같음)